

저작권법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저작권세미나서 각계 의견 모아

개정 저작권법이 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지 2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저작물 이용양태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질서가 요청됨에 따라, 저작권법은 다시 한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張仁淑)가 6월 30일 언론회관에서 「현행 저작권법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도 확인됐다.

복제기술의 발전 따른 변화 반영해야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金文煥 교수(국민대)는, 복사기·녹음기·녹화기 등의 대량보급으로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짐으로써 저작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 발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기·녹음기·녹화기 등의 기기 자체와 복제업소에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여 그 금액을 저작자들에게 분배해주는 부과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하여 공유로 된 저작물 이용시에도,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일정한 사용료를 부담도록 하는 有償公有制度를 신설해야 하며, 복제권자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구법에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인 첨부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저작권 위반의 형사사건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데, 이를 反意思不罰罪로 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작권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출판물의 추정부수도 대폭 늘려야 하고, 권리의 침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저작권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申鉉洛씨(한국演者단체연합회 사무국장)는 저작인접권의 위상에 대해 발표하면서, 판매용 음반의 대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 등의 대여권을 인정해주고 대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연은 사람의 직접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책을 제시한 李斗暎씨(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는, 현행 저작권법은 2년전 개정 당시만 해도 훌륭한 수준이었으나,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저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권리도 함께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2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저작물 이용양태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질서가 요청됨에 따라, 저작권법은 다시 한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먼저 그는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미술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작품마다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원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고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교수와는 달리, 현행법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이유와 효용성이 없고 시간과 경비의 낭비만 가져오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시 사전 조정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선, 현행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인 줄 알면서 배포한 행위만 침해로 보고 있는데,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침해로 봄아 하며, 또한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에 대해선 김교수와 달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현재 5,000부로 추정한다고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잡지·방송 등에 게재되거나 방송된 시사보도내용은 다른 신문·잡지·방송 등에 게재 또는 방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며, 在北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어서 저작물의 방송사용에 있어서의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金宰寬씨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세미나 (6월 30일 언론회관)

(한국방송공사 저작권부장)는 현행법이 음악 저작물 방송에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악저작물 방송에서 모든 음악마다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 점,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받은 경우에도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녹음·녹화를 못하는 점, 수많은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마다 일일이 개별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저작권 분쟁의 발생시, 처음부터 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 높여야

주제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주제발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표시했다.

먼저 이용권씨(문예진흥원 사무총장)는 저작권은 사전·공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유상공유제도가 실시되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에는 배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김문환교수의 의견에 의문을 표시했다.

장수길 변호사는 이두영씨가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출판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 침해 행위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미법 계통의 경우와 같이 침해자의 주거·사무실에서 침해물을 일방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수교수(고려대)는 저작권법은 전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용자 측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의의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저작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창씨(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를 반의사불법죄로 해야 한다는 김문환교수의 주장에 대해 권리 위에 잡자는 사람까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저작인접권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현숙씨의 주장에 대해선 좀 더 연구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 후 저작자의 권리의식이 증대했음에도 소송이 많지 않은 것은 소송비용 등 소송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재관씨가 주장한 저작권 분쟁시의 조정전치주의는 실제 권리의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정리하면서 사회자 李重漢씨(서울신문 논설위원)는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은 불과 2년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사기기의 급격한 발전, 비디오의 확산, 북한 원전이나 월북 저작자들의 저작물 해금·출판 등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에 대한 인식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차창용 기자